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준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88 발의연월일: 2024. 9. 3.

발 의 자:김준혁·염태영·박희승

김영진 · 김태년 · 백혜련

이수진 • 서미화 • 김승원

김병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,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는 등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하여그 고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으며,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도시 및 지역간 발전의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의 장애물 설치 기준을 45미터 이내에서 1,000피트(약 300미터) 이내로 높이는 등 고도제한을 완화하고, 군사작전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

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함(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본문 중 "45미터"를 "1,000피트(약 300미터)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제2호 중 "7분의 1"을 "1분의 1"로 한다.

③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국 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2항의 최 고장애물을 실제 비행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며, 사 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비행안전 고도제한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제4항 중 "제5항"을 "제6항"으로 한다.

제13조제7항 중 "제10조제5항"을 "제10조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9항 단서 중 "제10조제5항"을 "제10조제6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0조(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제10조(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) ① (생 략) 또는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 기지의 제3구역,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 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 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 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 -----1,000피트(약 300미터)-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・식물이 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 는 재배할 수 있다. 다만, 지원 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• 제5 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 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 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

축	또는	는 공조	물의	설치]를	할
수	없거] 되는	경우여	에는	최고	!장
애딑	물의	지표면	! 높이	가 를	높은	구
역의	의	최고장	애물을	・フ	준으	.로
하여	겨 조	용하디				

<신 설>

-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구역 간의 경계부분에서의 표면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.
- 1. (생략)
- 2.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 구역의 제4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 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3구역 이 제4구역과 접하는 부분에 서는 각각의 경계부분으로부

③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
관한 특별법」 제4조제1항에
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
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대하여
는 제2항의 최고장애물을 실제
비행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
<u>상으로 산정하며, 사실상 비행</u>
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지역은
비행안전 고도제한을 적용하지
아니한다.
<u>4</u>
1. (현행과 같음)
2

터 상방향으로 <u>7분의 1</u>의 경 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로 한다.

3. (생략)

④ • ⑤ (생 략)

- 제11조(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7 등) ① ~ ③ (생 략)
 - ④ 관할부대장등은 제10조제1 항제2호, 제2항 및 제5항에 따 른 장애물 외의 건축물·공작 물·식물 등으로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 가 있는 장애물에 대하여는 소 유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 하고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 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- 제13조(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7 협의 등) ① ~ ⑥ (생 략)
 - ①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 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그 의견에 이의가 있 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<u>1분의 1</u>
3. (현행과 같음)
<u>⑤</u> · 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
항과 같음)
제11조(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
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4
제6항
⑤ (현행과 같음)
제13조(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
협의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
승)
⑦

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(당초 협의기관의 직근상급기관을 말하되, 제10조 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 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)에게 재협 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- ⑧ (생략)
- ⑨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 장등이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 다 만, 국방부장관이 제10조제5항 의 사항에 대하여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 음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.

① · ① (생 략)

제10조
제6항
⑧ (현행과 같음)
9
제10조제6항
 ⑩ · ⑪ (현행과 같음)